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440호
- 나. 제출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 다. 제출일자 : 2016. 10. 31.
- 라. 회부일자 : 2016. 11. 3.

II. 개정이유

- 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관련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출석 심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에 근거하지 않은 조례상의 서면 심의 개정 조치 요구

III. 주요내용

- 가. 위원장을 공무원에서 민간위원으로 변경
- 나.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연임 삭제)
- 다. 서면심의 삭제
- 라. 세부변경사항: 신·구대비표 참고

IV.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 다. 협의: 상위법령의 후속 조치로 해당 없음
- 라.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2) 입법예고: 해당 없음
 - 3) 규제심사(규제신설, 규제폐지, 규제완화, 규제강화): 해당 없음
 - 4) 부패영향 평가: 해당 없음
 - 5) 성별영향 분석 평가: 분석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
 - 6) 서면심의 삭제 관련: 행정자치부 관련 공문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 1440호로 제출되어 2016년 11월 3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시행령에 근거하지 않은 조례상의 서면심의 삭제 등 일부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 32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 규모 이상의 계약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그리고 과징금 부과시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106조를 통해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바, 동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최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반영하여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공무원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원회내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하되 연임규정을 삭제하고, 기존에 운영하던 서면심의 규정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 먼저 당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르면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였으나, 2016년 11월 29일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고, 이보다 먼저 2016년 1월 15일 개정된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동 조례에 단순 반영한 것으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법적 통일성을 유지하고 계약심의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표-1] 서울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

(기준 : 2016.9.30.)

구분	소속	직명	주요경력	비고
위원장	서울시교육청	교육재정과장	. 서울시교육청 교육재정과장	당연직
위 원	(사)한국투명성기구	상임이사	. 한국노동복지센터 이사	신규

			. (사)한국갈등해결센터 갈등해결전문위원 . 중앙대학교 강사 . 교통안전공단 청렴옴브즈만	
위 원	법률사무소 휴먼	변호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 . 법률사무소 휴먼 변호사	신규
위 원	서울시 재무과	계약총괄팀장	. 서울시 재무과 계약총괄팀장 . 서울시 재무과 세무소송팀장	신규
위 원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부장	. 서울특별시 금천구 및 양천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 경희대 공공대학원 제1기 공공조달제도 고급전문가 연구과정 수료 . 서울특별시 원가조정거버넌스 건축위원 . 국가기술자격증 등록번호 95204100307N (건축기사1급)	신규
위 원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서울특별시회	과장	. SH종합건설(주) 차장 . 건설기술경력증 발급번호: G00479859(토목 초급)	신규
위 원	한국전기공사협회	차장	. 한국전기공사협회 강원도회 과장 . 한국전기공사협회 법령제도팀 차장 . 국가기술자격증 등록번호 97202050238X (건축기사1급)	신규
간 사	서울시교육청	지방교육행정사무관	. 서울시교육청 교육재정과 계약관리팀장	간사

※ 위원임기 : 2016.10. 1. ~ 2018. 9.30.(2년)

- 한편 동 조례 제5조제4항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로 하여금 신속한 의결 및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동법 시행령에 서면심의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없고, 행정자치부에서도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서면심의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동법 시행령의 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4546,2016.9.1.1)하였는바, 동 조례 제5조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서면심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중요한 계약심의를 참여하는 심의위원들의 업무 책임성을 강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1] 서울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구분	2013	2014	2015	2016
서면심의 횟수	3	3	7	3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현행 지방계약법령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시 위원을 출석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서면심의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는 각 사안에 대해서 위원들 사이에 자유로운 의사교환 및 설득의 과정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사항이기 때문임. 따라서 현행 조례에 계약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람.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1.30.] [대통령령 제27622호, 2016.11.29., 일부개정]

제3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3.8.6., 2016.5.29.>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라. 관련 업체가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3.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탁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그 심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제1항제3호의 경우 그 심의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 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③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11.30.] [대통령령 제27622호, 2016.11.29., 일부개정]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시·도에 설치하는 시·도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와 시·군·구에 설치하는 시·군·구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5.22., 2014.11.28., 2015.8.19., 2016.1.15., 2016.9.13., 2016.11.29.>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삭제 <2016.1.15.>
6.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7.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③ 시·도지사는 시·군·구위원회의 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의 현황을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공할 수 있다.

④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6.1.15.>